

●교육부고시 제2024-2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공제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5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1. 2025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 분	2024년 기준공제료	2025년 기준공제료
유 치 원	3,600	4,000
초등학교	4,700	7,000
중 학 교	11,300	17,500
고등학교	16,100	21,700

-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시·도공제회별 중·고등학교 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3) 기타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 산업체부설학교·학급,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료는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2. 2025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다. 각 시·도공제회는 시·도별 학생 수, 손해율, 운영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30% 이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